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172

발의연월일: 2021. 12. 30.

발 의 자:전주혜·조해진·김용판

한무경 • 박덕흠 • 김태호

김미애 · 지성호 · 윤창현

김예지 · 강민국 · 윤주경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2021년 4월 20일 제정되어 시행중임.

그런데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등을 규정 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생활에 관한 비밀 등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고,

-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 나.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 참여,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7조의3 신설).
- 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8조제3항 삭제).

법률 제 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스토킹범죄의 수 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의3(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 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

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 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제1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피해자의 신원 등 누설죄) 제17조의2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 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호사 선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스토킹범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u>	제17조의2(피해자의 신원과 사생 활 비밀 누설 금지) 스토킹범 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 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 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 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u><신 설></u>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3(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 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 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 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 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 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제18조(스토킹범죄)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 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신 설>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그 법정 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 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② (현행 과 같음)

<삭 제>

있다.

제20조의2(피해자의 신원 등 누

설죄) 제17조의2에 따른 피해 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